[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]

❖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가.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 합격자(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)
나. 총평량평균 : 3.0 이상
다. 이수학점
- 석사/박사과정 : 30학점 이상(25학년도 이전 입학생), 27학점 이상(26학년도 이후 입학생)
- 통합과정 : 54학점 이상(25학년도 이전 입학생), 48학점 이상(26학년도 이후 입학생)
  ※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 학점이며, 세부 수료요건은 학과별 상이(학과 내규 확인 필수)
-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
라. 학위논문심사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
- 상기 가) ~ 다)항 요건 모두 충족된 자
- 단, 학점은 수강 신청 학점도 해당 학기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 가능(단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)
- 일부 학과의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
-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(중요)

마.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(중요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)
-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석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Ⅰ' 1학기 이상,
  박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Ⅱ'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.(중요)
  ※ 일부 학과의 경우, 박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과 내규 확인 필수

-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**연구지도 이수내역이 졸업요건에 반영되므로,** 연구지도(I 또는 II) 수강 삭제 및 철회로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(학과의 개별연구지도와 다름. 혼동 유의)

1.연구계획서 제출자격 : 직전 학기(2026-1)까지 자격시험(외국어.종합시험)을 합격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단, 2026-2학기 휴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복학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됩니다.)

2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

※ 중요: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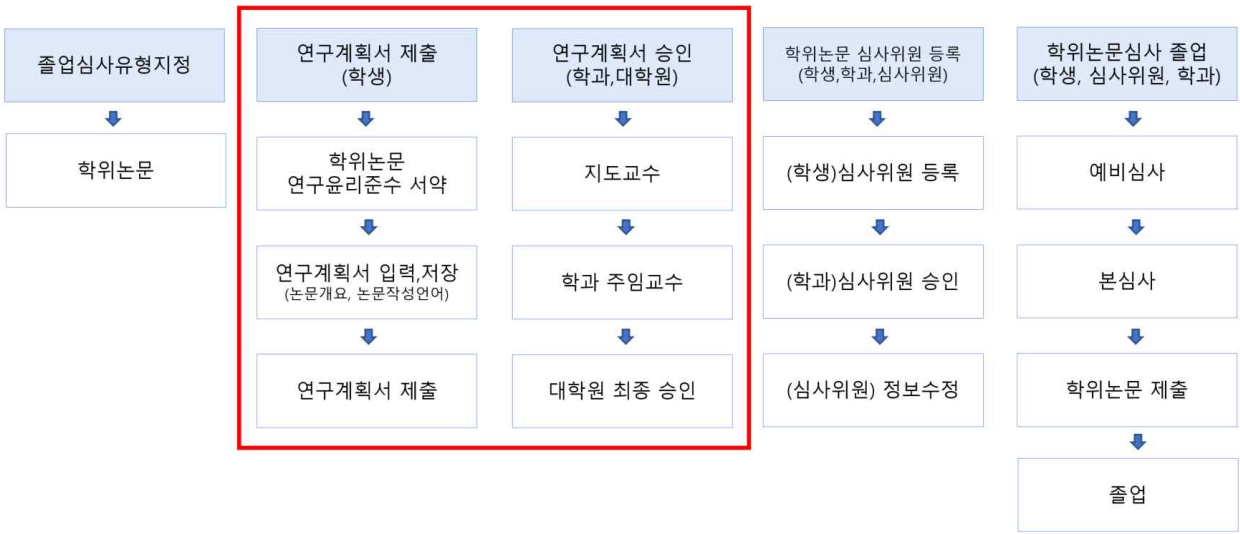

가. (심사유형지정) 포털에서 졸업심사 유형을 '학위논문'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'신청' 버튼 클릭(필수)
('신청' 버튼 미 클릭 시 연구계획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안 됨, 유의)

나. (연구계획서 작성·제출) 연구계획서 제출 화면에서 연구계획서 정보 입력 후 '제출' 버튼 클릭(중요)

다. (연구계획서 승인) 연구계획서 승인은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으로 순차 승인이 되어야 최종 완료 됨

3.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및 영문성명(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) 정정 기간 : 26. 8. 13(목) ~ 10. 16(금) 17:00까지
-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, 성명 변경은 포털에서 신청

4. 논문심사위원 명부 등록 및 승인
(학생) 심사위원명부 포털 등록: 26. 10. 16(금) 17:00까지
(학과) 심사위원명부 포털 승인: 26. 10. 20(화) 17:00까지
심사위원은 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교내,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입력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심사위원 구분
(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구분: 교원번호 유무)</th><th>교원
번호</th><th>[학사포털 심사위원등록]
졸업 > 학생 > 논문심사위원등록 :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, 내부/외부 선택하여 입력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교
내</td><td>본교 및 국제캠퍼스 소속으로
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</td><td rowspan="2">O</td><td rowspan="2">심사위원장
심사위원
 </td></tr>
<tr><td>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으로
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</td></tr>
<tr><td>외
부</td><td>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
(즉, 본교(국제캠퍼스),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외부 박사학위 소지자)</td><td>X</td><td>외부 심사위원
 </td></tr>
</table>

- 심사위원 등록: **연구계획서 승인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(심사위원장, 심사위원)**
- 박사/통합 심사위원 등록(일부 학과만 해당):

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지도교수만 등록하고, 학위논문 심사 학기에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부 등록

가. 교내(내부) 심사위원 : 전임 및 비전임 교원

1) 본교 소속 :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
2) 본교 의과대학、치과대학、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

-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
3) 주의사항: **명예교수-비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이고 교원번호가 있는 경우 '내부'**

나. 교외(외부) 심사위원 (석사는 1명, 박사는 2명까지 선정 가능, 외부 심사위원 인원수 준수 필)

: 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교(국제캠퍼스), 의료원, 미래캠퍼스 **소속이 아닌 자** , **퇴임교원(외부심사위원번호)**

*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가 개정됨에 따라 박사과정 또한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으면 되오나, 일부 학과의 경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을 유의(학과 내규 확인 필수 - 학과 행정팀 문의)

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

제31조의2(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)

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1.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
제4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①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언더우드 석좌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심사위원 선정)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.
1. 석사학위논문: 3인
2. 박사학위논문: 5인
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
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,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. 단,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, 최대 1명 이내에서 학과 심의를 거쳐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.
④ 같은 조 제1항의 심사위원 변경이 필요하거나 제3항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(본심사 시행 이전) 이내에 심사위원 변경 및 추가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.
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을 초과하는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하고, 자문위원의 논문심사비는 본교 「논문심사비 지급 규정」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심사위원장)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언더우드 석좌교수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,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

5. 학위논문 예비심사

- 예비심사 : 26. 9. 29(화) ~ 10. 23(금)까지
- 예비심사 결과보고서(심사위원장 작성) 접수 : 학과 지정 기간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

6. 학위논문 본심사

- 본심사 : 26. 11. 20(금) ~ 12. 18(금) 까지
- 본심사 결과보고서(심사위원 전원 작성) 접수 :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

7. 학위논문 완성본 온라인 제출(예정): 27. 1. 1(금) ~ 1. 15(금) (예정: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)

- 제출: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제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 https://dcollection.yonsei.ac.kr)
  ※ 인준서 날인(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)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위논문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!!!

8.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: 예비심사 종료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**26. 10. 30 이후에 '학위수여 예정증명서'를 해당 학기 졸업사정 전(본심 종료일)까지 발급 가능하며, 26-2학기 졸업사정 기간부터 학위수여식 이전까지의 학수여예정증명서 발행대상은 졸업예정자로 대체**됩니다.

9. 유의사항

-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,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.

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